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335

제출년월일 : 2021년 4월 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지역개발기금은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차입금 등으로 조성함.

나. 지역개발기금 설치 이후 주요 조성재원인 지역개발채권 발행실적 저조 등 기금 활용도가 낮아, 지역개발기금을 폐지하여 자금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폐지함.

나. 기금의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과조치를 두고, 다른 조례의 지역개발기금 관련 사항을 삭제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21. 3. 9.~3. 29.)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상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승계한다.

②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의 2020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를 거쳐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간투자사업, 지역개발기금”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김가연(02-2133-6866)